NEWS LETTER FOR CEO

배당을 활용한 CEO 자산관리 전략

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그러나, 회사 설립 후 단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굳이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또는 막연 히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 많은 법인들이 배당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, 이제 배당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.

"가족간의 지분설계를 전제로 한 배당정책은 <mark>최상의 절세전략</mark> 이 될 수 있음은 물론 CEO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."

배당정책의 주요전략

- 1. 배우자, 자녀 등을 고려한 지분설계 선행
- 2. 매년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진단 후 배당정책 수립
- 3. 중간배당을 통한 탄력적인 배당 실행

배당정책의 필요성

대표이사의 세부담 경감

대표이사의 **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혼합설계**하면 개인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절세 금액만큼 개인의 재투자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미처분이익잉여금 진단

정기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매년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(증여·양도, Exit전략 등)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자산배분차원에서 필요성

중소기업 CEO들의 개인자산은 70% 이상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. 정기적인 배당은 **CEO의 주식자산을 현금화해서 주식 외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산배분**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산관리 전략입니다.

배당 기본 이해







[정기배당]

정기배당은 결산기 종료일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정합니다.

[중간배당]

정관으로 중간배당 규정을 정하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. (상법 462조 3 1항)



배당금 지급 시기

원칙적으로 배당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단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. (상법 464조 2 1항)



배당가능이익

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상법 462조 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. 회계상으로는 '미처분이익잉여금' 한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.



현물배당

- · 회사는 금전 이외에도 주식 또는 현물(재고자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보험증권, 고정자산 등)을 통한 이익배당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(상법 462조의 4항)
- · 중간배당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만 인정됩니다. (주식배당 안됨)
- ·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현물에 해당하므로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 모두 가능합니다.



차등배당

- · 2021년부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받은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됨에 따라 초과배당(차등배당)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.
- · 다만 최대한 주식가치가 낮을 때 가족간의 적절한 지분분산을 통해 매년 꾸준히 균등배당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

※ 본 자료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바,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